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 상호(명칭): 서안성농업협동조 	1.	상호('명칭)) :	서안성농업협동조합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--	-----	-----------

2. 성명(대표자): 서안성농업협동조합 대표 (생년월일: 1913년 46월 36일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21-5, 7번지

(전화번호: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대체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 총 4 기 총용량: 29,000.00 ㎡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: 방청도장,탱크실 설치,누출검사관설치

나. 설치내용: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06년 7월 13일

경기도 안성사장이라

<변경 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

<참고사항>

일] 자	내 용	확	인

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유류 저장시설	경유	3,000.00 l	1		지하탱크
유류 저장시설	휘발유	2,000.00 ℓ	1		지하탱크
유류 저장시설	경유	16,000.00 ℓ	1		지하탱크
유류 저장시설	등유	8,000.00 ℓ	1		지하탱크

<행정처분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